

발 간 등 루 번 호

76-5270000-000013-01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II

Women Friendly Guidelines for
Public Facilities in CHANGWON II



GUIDE LINE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II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제1항).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공간을 조성하는 기준으로,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및 이를 동반한 여성과 남성의 공간이용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시설 신축 및 개·보수 시 공공시설의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확보 및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창원시는 2020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은 도시로서,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이용시설 등의 여성친화적 공간조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4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편의
2. 안전성·접근성·편리성·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3.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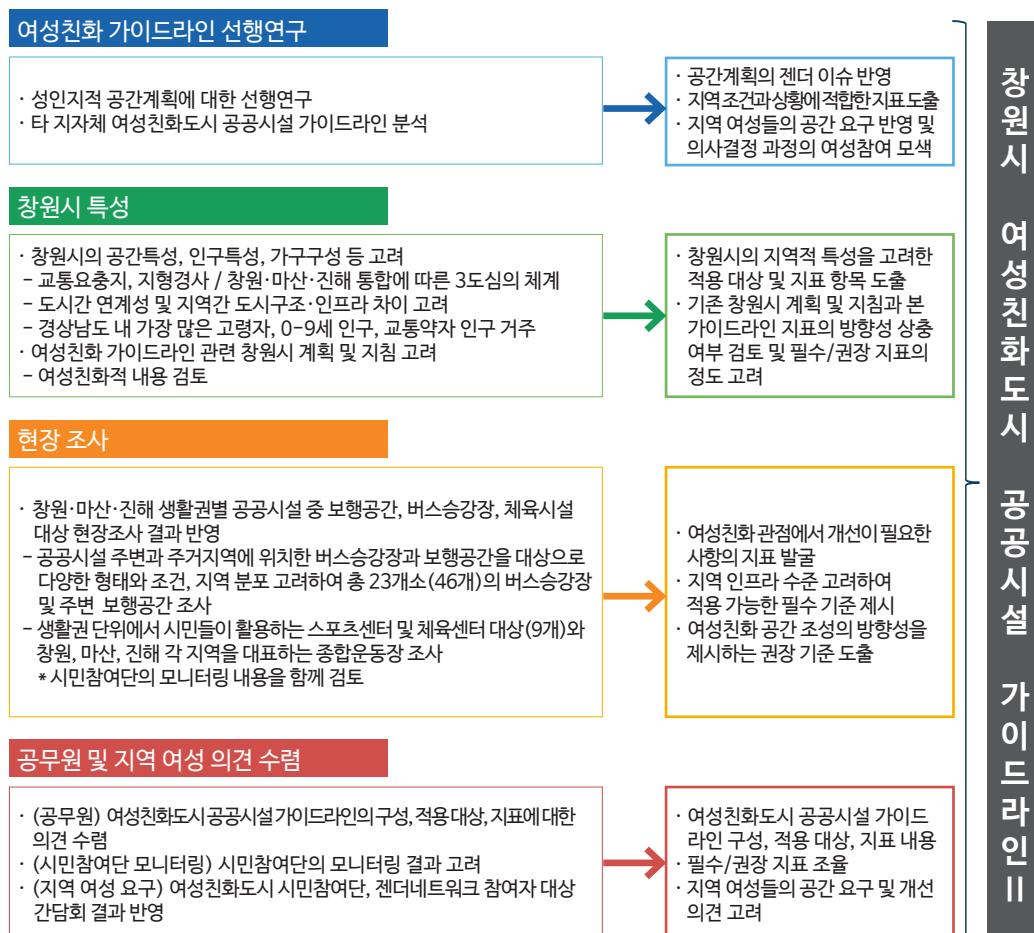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지난 2021년에는 건축물과 공원을 대상으로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고, 올해 2년 차에는 범위를 확장하여 도시기반시설과 특화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지역 내 생활체육시설을 걸어서 10분 이내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체육시설 구축 및 노후된 공공체육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3대 메이저 프로스포츠의 지역 연고 구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체육시설과 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특화시설로 설정하여 성인지 관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지표의 도출

가이드라인의 지표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습니다.



GUIDE LINE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2년간 나누어 추진되는 과업으로, 2년차에는 도시계획부문, 도시기반시설, 창원시의 특화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 도시계획 부문은 공간정책에 대한 여성친화적 관점의 점검사항 등을 제시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도시기반시설은 이동을 위한 시설과 관련된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여성의 도보 및 버스 이용 비율이 높고, 영유아를 동반하여 이동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보행공간과 버스승강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습니다.
- 창원시 특화시설은 생활체육시설과 종합운동장의 계획 시에 적용합니다. 생활체육시설이 생활권 내 다양한 이용자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종합경기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이용되며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구분	내용	적용 대상		
1년차	1. 건축물 진입부	대지 내 보행로, 주차장, 주출입구에 대한 기준	다종 이용 시설	공공청사	시청,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2. 건축물 내부	공간구조 및 배치, 내부시설, 위생시설, 돌봄 및 배려 시설에 대한 기준		교육시설	직업훈련소, 도서관, 평생교육기관 등
	3. 공원	주차장, 산책로, 돌봄·배려 시설, 편의시설, 운동시설 등에 대한 기준		문화·관광·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여성회관, 복지관, 청소년시설 등
2년차	1. 도시계획 부문	공간정책에 대한 여성친화적 점검사항 등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신축 및 리모델링 계획 등의 수립		
	2. 도시기반 시설	이동 시설의 기준	보행공간, 버스승강장		
	3. 창원시 특화시설	생활체육시설, 종합운동장			

가이드라인 II의 이용 방법

가이드라인의 기준지표 중 생활체육시설, 종합운동장의 기준지표들은 ①1년차의 [공공시설 - 건축물]에 포함되었던 지표 중 생활체육시설, 종합운동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지표들과 ②창원시의 생활체육시설, 종합운동장에 특화된 새로운 지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II를 우선 적용하고,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은 1년차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용어 정의

가이드라인의 용어는 다음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구분	적용 대상
다목적 화장실	장애인, 영유아 등반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변기, 기저귀교환대, 영유아 거치대, 어린이용 세면대, 비상벨이나 비상전화 등을 갖춘 화장실을 의미함 - 성별이 다른 자녀와도 동반이 가능함 - 영유아동반자를 위한 별도의 화장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장애인 화장실 내에 영유아 시설을 설치하여 다목적 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음. 이때 장애인 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우선적으로 충족하여야 함
배려주차장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고령자 등 승하차 시 보다 넓은 주차공간이 필요한 이용자를 위한 확장된 넓이의 주차구역
아기휴게실	모유수유, 분유 및 이유식 섭취, 기저귀 교환 등 전반적인 영유아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함
영유아 놀이시설	실내에 설치된 영유아 이용 공간을 의미하며, 유아도서관, 공동육아 나눔터, 유아놀이방 등을 포함하여 영유아가 이용하는 공간을 포괄함
영유아 동반 이용시설	유아차 보관소 또는 대여소, 유아용 의자, 기저귀교환대, 영유아 보조의자, 아기휴게실 등 영유아 동반 시 필요한 시설을 포괄함
주 보행로	인근의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공원 등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승강장에 연결된 보행로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

CONTENTS

I. 도시계획부문

1. 공간정책의 점검사항

1.1 법·제도 등 정비

★(1) 성별 요구 반영	004
(2) 여성 고려 공간 기준	004
(3) 여성친화도시 정책 연계 고려	005

1.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보장

(1) 위원회 여성 비율	006
★(2) 주민의 의사수렴	006
★(3) 시민참여단 협업 고려	007
(4) 젠더 전문가의 의견 활용	007
(5) 기획·설계·시공단계의 여성 전문가 참여보장	007

1.3 기초조사 시 고려사항

★(1) 인구 특성 고려	008
★(2) 지역 특성 고려	008

1.4 성인지 관점의 검토

(1) 공간정책의 성별연관성 검토	009
--------------------	-----

1.5 도시 및 건축공간 조성 시 고려사항

(1) 교통체계의 교통약자 편의성 보장	010
(2) 도시디자인과 조명 등에서 여성의 안전보장	010
(3) 일·가정 균형을 위한 공간 계획	011
(4) 인구 다양성의 포용	011
(5) 여성 네트워크 구성 지원	011

II. 도시기반시설

1. 보행공간

1.1 보행로 설치

★(1) 주변 시설과의 연계	016
★(2)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017
★(3)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의 분리	018

1.2 보행로의 형태

★(1) 보행로의 설치 유효폭	019
(2) 보행로의 재질 및 마감	021
★(3) 단차 및 보행장애물	023
★(4) 보행로의 기울기	024
★(5) 보행로의 관리	026

1.3 보행공간 편의시설

★(1) 편의시설 설치	027
(2) 안내시설 설치	027

1.4 보행공간의 안전성

★(1) 야간 적정 조도 유지	028
(2) 조명 설치	029
★(3) 범죄예방 시설 설치	030
★(4) 보행공간의 시야 확보	030

2. 버스승강장

2.1 버스승강장의 설치

★(1) 버스승강장의 위치	032
(2) 버스승강장과 주변시설의 연계	032
(3) 버스승강장의 접근	033

2.2 버스승강장의 구조

★(1) 버스승강장의 형태	034
(2) 버스승강장 내 의자 설치	035
★(3)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 공간 확보	036
(4) 버스승강장의 단차	038
★(5) 보행공간 확보	039

2.3 안내시설

★(1) 노선도	040
★(2) 안내기 및 안내표지판	041

2.4 버스승강장의 안전성

★(1) 시야 개방성 확보	042
★(2) 버스승강장의 안전시설 설치	043

CONTENTS

III. 특화시설

1. 생활체육시설

1.1 주차장

(1) 배려주차장의 설치대수	048
(2) 배려주차장의 설치 위치	049
(3) 배려주차장의 주차구역 크기	049
(4) 주차장의 유도표시 및 안내표시	050

1.2 복도 및 실별 출입문

(1) 복도의 바닥마감	051
(2) 복도 내 난간 설치	052
(3) 실별 출입문 및 복도의 유리창 설치	054

1.3 계단

(1) 계단의 유효폭	055
(2) 계단의 재료	056
(3) 계단의 난간	057

1.4 안내시설

★(1) 종합안내도	058
(2) 승강기 내 층별 안내판 설치	059
(3) 안내 픽토그램 표시	059

1.5 휴게공간

(1) 휴게공간 확보	060
-------------	-----

1.6 화장실

(1)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	061
★(2) 남녀 화장실의 영유아 보조화장실 설치	062
★(3) 남녀 화장실의 영유아 및 어린이 시설 설치	064
(4) 다목적 화장실	065
★(5) 화장실 안내 표시	066

1.7 탈의 및 샤워시설

(1) 남녀 출입구 분리	067
(2) 탈의실 구조	068
(3) 파우더 공간 설치	069
(4) 샤워실 출입구	070
(5) 탈의실 및 샤워실 바닥재	071
★(6) 샤워기 칸막이	072
★(7) 장애인 샤워실	073
★(8) 가족샤워실	075

1.8 수영장

(1) 이용자의 다양성 고려	076
★(2) 고령자, 장애인 이용 고려	077

1.9 아기휴게실

(1) 아기휴게실 설치	078
--------------	-----

III. 특화시설

2. 종합운동장

2.1 주차장

★(1) 배려주차장의 설치대수	080
(2) 배려주차장의 설치 위치	080
(3) 배려주차장의 주차구역 크기	081
(4) 주차장의 유도표시 및 안내표시	081
(5) 보행안전통로 확보	082
(6) 주차장 내 적정조도	083
★(7) 주차장 내 응급상황 대처 시설	084

2.2 안내시설

★(1) 종합안내도 설치	085
(2) 종합안내도 표시	086
(3) 피난안내도	087

2.3 관람석

(1) 휠체어 좌석 설치	088
(2) 휠체어 좌석의 접근성 확보	090

2.4 편의시설

★(1) 영유아 동반 이용시설 설치	091
(2) 유아차 보관소의 접근성 확보	092
★(3) 다목적 화장실	093
(4) 화장실 안내 표시	094

2.5 휴게공간

(1) 휴게공간 확보	095
-------------	-----

참고문헌 및 관련 법령

096



I. 도시계획부문

1. 공간정책의 점검사항

- 1.1 법·제도 등 정비
- 1.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보장
- 1.3 기초조사 시 고려사항
- 1.4 성인지 관점의 검토
- 1.5 도시 및 건축공간 조성 시 고려사항

1. 공간정책의 점검사항

1.1 법·제도 등 정비

★ (1) 성별 요구 반영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정책은 다양한 창원시민의 요구를 고루 반영하여야 하므로, 주민의 성·연령·지역 등 주민의 특성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 및 조례에 포함할 수 있음

구분	기준 지표
권장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과정에서 성·연령·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민 요구 반영에 대한 내용 명시

※ 창원, 마산, 진해의 도시구조 차이 및 인구 구성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주민 요구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책의 주민 체감도 및 실효성 향상을 꾀할 수 있음

(2) 여성 고려 공간 기준

도시 및 건축공간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계획과 설계지침 등은 여성의 공간이용 요구 및 특성을 고려하는 기준을 포함할 수 있음

구분	기준 지표
권장	각종 공간계획과 설계지침 등은 여성의 공간 이용 요구 및 특성을 고려하는 기준 포함

(3) 여성친화도시 정책 연계 고려

용도 지역 및 공간 프로그램의 설정 등과 관련된 도시계획의 내용은 돌봄, 안전, 여성 일자리, 공동체 등 창원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그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구분	기준지표
권장	도시 및 건축계획의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연계성 여부 및 반영 가능성 검토

1. 공간정책의 점검사항

1.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보장

(1) 위원회 여성 비율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결정기구의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40%이상은 여성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공간 정책 관련 정책결정기구의 위촉직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 확보

관련 법령 및 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2) 주민의 의사수렴

주민의 의사를 고루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여야 함. 성, 연령, 지역, 인종, 문화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음

구분	기준지표
필수	성, 연령 등을 고려하는 다양한 주민의 의사 수렴 장치 마련
권장	성, 연령, 지역, 인종, 문화 등을 고려하는 다양한 주민의 의사 수렴 장치 마련

※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여러 절차에서 다양한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3) 시민참여단 협업 고려

현황조사, 시민 요구조사, 공간 및 프로그램 계획 등의 과정에서 모니터링이나 조사, 토론 및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참여단과 협업함으로써,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공간계획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구분	기준 지표
권장	공공시설 설치 과정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과 협업 고려

※ 시민참여단 외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나 지역 여성시민단체, 지역주민과의 활동 연계도 고려할 수 있음

(4) 젠더 전문가의 의견 활용

도시 및 건축공간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가 의견 청취 시,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방안과 관련하여 젠더(성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할 수 있음

구분	기준 지표
권장	자문회의, 보고회 등 전문가 의견 청취 시 젠더(성인지) 전문가의 의견 활용

(5) 기획, 설계, 시공단계의 여성 전문가 참여 보장

도시 및 건축 분야는 성별 직종 분리가 강하게 나타나는 분야임. 이를 완화하고 여성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기획, 설계, 시공 등 공간 조성 과정에 여성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음

구분	기준 지표
권장	공공시설의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 여성전문가의 참여 방안 마련

1. 공간정책의 점검사항

1.3 기초조사 시 고려사항

★ (1) 인구 특성 고려

도시 및 건축공간의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시, 다양한 창원시민의 요구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성별, 연령, 장애 여부, 경제활동 여부, 미취학 아동 유무, 지역별 인구 구성, 인종 및 문화 다양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인구의 특성 및 시설 요구를 조사할 수 있음

구분	기준 지표
필수	공공시설 설치 전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 인구 특성 조사
권장	공공시설 설치 전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장애 여부, 경제활동 여부, 미취학 아동 유무, 지역별 인구 구성, 인종 및 문화 다양성 등 인구 특성 조사

★ (2) 지역 특성 고려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구조, 산업특성, 지역 자원, 인프라 현황, 지역별 특성 등 지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고려할 수 있음

구분	기준 지표
권장	경제구조, 산업특성, 지역 자원, 인프라 현황, 지역별 특성 등 창원시의 특성 고려

1.4 성인지 관점의 검토

(1) 공간정책의 성별연관성 검토

도시 및 건축공간의 조성과 관련된 주요한 정책의 수립 시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여성친화 도시 공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음

구분	기준지표
필수	주요 공간 정책(계획 및 사업)시 성별영향평가 수행
권장	주요 공간 정책(계획 및 사업)시 여성친화도시 공간 전문가의 컨설팅 및 자문 수행

1. 공간정책의 점검사항

1.5 도시 및 건축공간 조성 시 고려사항

(1) 교통체계의 교통약자 편의성 보장

여성은 남성보다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 이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영유아, 아동 등 돌봄대상자를 동반한 이동이 많음.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들의 이동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음

구분	기준지표
권장	임산부, 영유아 및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보행환경과 교통체계의 여건 총족(예:유아차의 이동이 용이한 보도 구조, 대중교통 연계 등)

(2) 도시디자인과 조명 등에서 여성의 안전 보장

도시 및 건축공간은 다양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도시디자인이나 조명 등의 계획 시 안전에 충약하거나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함

구분	기준지표
권장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과 조명 계획(예:범죄예방환경 조성)

(3) 일·가정 균형을 위한 공간 계획

영유아, 아동, 고령자 등의 돌봄 관련 기반시설의 제공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가정 균형에 중요하며, 남성보다 돌봄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주거 및 직장 공간 계획 시, 돌봄 관련 시설의 적절한 설치를 통해 창원시민의 일·가정 균형을 지원할 수 있음

구분	기준 지표
권장	주거 및 직장 공간의 계획 시, 일·가정 균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노인보호시설 등 돌봄 관련 기반시설의 여건 총족

(4) 인구 다양성의 포용

여성친화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의 평등한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융합을 지향함. 여성친화도시의 도시공간은 특정한 인구 그룹에 대한 배제나 제약을 방지하고, 다양한 계층 간 융합을 꾀하는 방향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음

구분	기준 지표
권장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문화가구, 외국인 노동자 등 인구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간계획 수립

(5) 여성 네트워크 구성 지원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역 여성들이 공공 영역에서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의 제공이 중요함. 이를 위해, 도시공간 계획 시 지역여성들 간에 네트워크를 장려하는 활동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음

구분	기준 지표
권장	지역공동체의 핵심인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를 장려하는 활동 공간 마련 (예: 소모임 공간, 동아리실 등 활동 공간)



II. 도시기반시설

1. 보행공간

1.1 보행로 설치

1.2 보행로의 형태

1.3 보행공간 편의시설

1.4 보행공간의 안전성

1. 보행공간

1.1 보행로 설치

(1) 주변 시설과의 연계

공공시설 주변과 대중교통 승강장에서 공공시설까지는 보행로를 확보하여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동반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구분	기준지표
권장	시·구청,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공원 등 공공시설은 대중교통 승강장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포함하여 주변에 보행로 설치

※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보행로를 충분히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과 대중교통 승강장 등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유아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이 차량의 간섭 없이 안전하게 보행하여 건축물에 진입하거나 대중교통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구분	기준 지표
필수	주 보행로는 연석·울타리 등으로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어야 하며, 공작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인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함
권장	보행로는 연석·울타리 등으로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어야 하며, 공작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인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함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다. 경계

-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인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설치사례



1

2

1. 난간, 수목과 관목을 통한 보차 분리
2. 수목과 관목을 통한 보차 분리

1. 보행공간

★ (3)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의 분리

통행 속도가 다른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는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는 색상 및 재질 등을 구분하여 설치
권장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는 통행이 혼재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설치

설치사례



1

2

3

1. 색상 및 재질로 구분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2. 통행이 혼재되지 않도록 단자 및 가로수로 구분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3. 완충지역을 두어 완전히 구분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1.2 보행로의 형태

★ (1) 보행로의 설치 유효폭

유아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 보행보조기, 휠체어 이용자 등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의 유효폭을 확보함

구분	기준 지표
필수	주 보행로는 유아차 및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2.0m 이상의 보도폭 확보.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완화 가능
권장	주 보행로는 유아차 및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2.5m 이상의 보도폭 확보

알아두면 편리한 TIP

■ 교행을 위한 유효폭

- 아이손을 잡고 가방을 든 사람(1,1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800mm
- 가방을 든 사람(8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500mm
- 유모차공간(5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200mm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잠을 설치할 수 있다.

■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보도의 유효 보도폭은 2m 이상의 너비를 확보해야 하며 가로 환경개선 등에 의한 여유가 있을 경우 2.5m 이상의 유효보도폭 권장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보도의 유효폭은 휠체어 또는 유모차 사용자 상호 간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최소 3.0m 이상 확보
- 지형 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폭을 2.0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 유효폭이 2.0m 미만이면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30m 이내 마다 폭 3.0m 이상, 길이 2.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교행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

1. 보행공간

설치사례



1

2

3

1, 2. 1.5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한 보행로

3. 2.0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한 보행로

(2) 보행로의 재질 및 마감

유아차 및 보행보조기, 휠체어 이용자, 아동, 고령자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이용자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하며, 보도의 틈새로 인해 보행에 방해받지 않아야 함

구분	기준 지표
필수	보행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坦하게 마감하고, 이음면은 5mm 이하로 설치
권장	필수 기준을 만족하며, 투수성 포장재 사용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라. 재질과 마감

-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坦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坦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3) 장애인들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유모차가 될 수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며, 이음새 틈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좁고 잘 채워진 이음새로 함
- 바닥포장재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하고 0.5cm 이상의 턱이 생기지 않아야 함

1. 보행공간

설치사례



1

2

3

1, 2, 3. 미끄럼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고, 이음면은 5mm 이하로
설치된 보행로

★ (3) 단차 및 보행장애물

유아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 보행보조기,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보행 시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단차 및 보행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함

구분	기준 지표
필수	횡단보도 진입부, 보도와 차도의 교차부 경계턱 단차 제거, 우수시설 및 트렌치 등은 보행로 내 설치 시 틈새와 단차없이 마감
권장	가로등, 가로수, 휴게의자 및 기타 시설물 등은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나. 기울기 등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교통약자를 위하여 횡단보도 및 보도 진입부의 턱을 낮추고 보·차도 간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함

·보도에 보도 펜스, 가로등, 가로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들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보도의 안전보행로 확보를 위해 간판,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 보행 장애물이 보도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함

1. 보행공간

★ (4) 보행로의 기울기

유아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 보행보조기, 휠체어 이용자 등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의 기울기를 확보함

구분	기준 지표
필수	종단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조성.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12까지 완화할 수 있음
권장	필수 기준을 만족하고, 횡단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조성.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25분의 1까지 완화

※ 종단기울기가 18분의 1 이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30m마다 수평 휴식참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나. 기울기 등

-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7호) 제3장 보도

3-3. 횡단경사 및 종단경사

가. 보도의 횡단경사는 50분의 1이하로 하되,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5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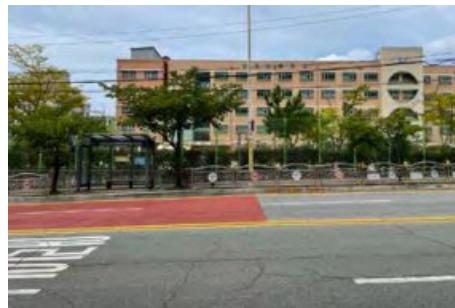
나. 보도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보도는 고저 차가 없고 연속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가능한 경사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위해 종·횡단기울기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진행 방향 횡단기울기는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지물상 혹은 배수의 경우에는 1/25 이하를 유지
- 진행 방향의 종단기울기는 1/24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1/18 이하는 50m마다 1/12은 30m마다 수평 휴식참을 설치

II. 도시기반시설

설치사례



1

2

1. 종단기울기가 1/18 이하인 보행로
2. 횡단기울기가 1/50 이하인 보행로

1. 보행공간

★ (5) 보행로의 관리

보도의 이용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도블럭 관리 및 보도블럭 틈새 잡초의 제초작업 등 보행환경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깨진 보도블럭 교체, 보도블럭 틈새의 풀 제거, 보행로를 침범하는 수풀 제거 등 주기적인 보행환경의 유지 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나. 기울기 등

-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7호) 제3장 보도

3-3. 횡단경사 및 종단경사

가. 보도의 횡단경사는 50분의 1이하로 하되,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5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나. 보도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보도는 고저 차가 없고 연속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가능한 경사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위해 종·횡단기울기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진행 방향 횡단기울기는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지물상 혹은 배수의 경우에는 1/25 이하를 유지
- 진행 방향의 종단기울기는 1/24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1/18 이하는 50m마다 1/12은 30m마다 수평 휴식참을 설치

1.3 보행공간 편의시설

★ (1) 편의시설 설치

장시간 보행이 어려운 노약자나 영유아를 동반한 보행자, 짐을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 등을 고려하여 보행공간 내에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함

구분	기준 지표
권장	보행로 인근 약 300m 전후 간격으로 휴게시설(벤치, 그늘막시설 등) 제공. 쉼터는 보행로를 침범하지 않아야하며 시선의 익폐와 차단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설치

※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의 보행로는 보행공간 내에 휴게의자 등을 설치하여, 장시간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음

설치사례



1 2

1, 2. 보행로에 휴게의자 설치

(2) 안내시설 설치

주변 공공시설의 위치 및 공중화장실, 영유아 돌봄시설 등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길목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함

구분	기준 지표
권장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시설 설치

1. 보행공간

1.4 보행공간의 안전성

★ (1) 야간 적정 조도 유지

여성 등 다양한 이용자의 야간보행 시 충분한 시야 확보 및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적정한 조도 유지가 필요함

구분	기준치 표
필수	주 보행로의 조도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0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
권장	주 보행로의 조도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30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A 3011 조도기준 [표5 교통]

- 도로 수송기관(공간의 전반 조명)

분류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도시 정류장	15	20	30

■ KSA 3011 조도기준 [표5 옥외시설]

- 교통 관계 광장(공간의 전반 조명)

분류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복잡한 장소	15	2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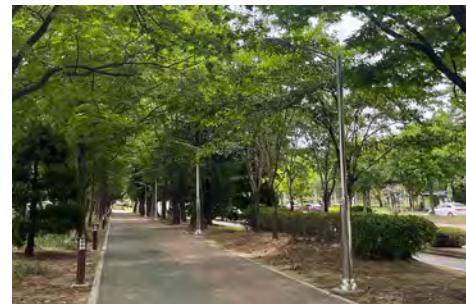
(2) 조명 설치

야간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차량중심의 도로조명을 개선하고 보행중심의 보도조명을 강화하여야 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차도와 보행로는 각각 충분한 조도를 확보
권장	필수 기준을 만족하고, 도로 시설물 및 수목으로 인해 조명이 가려져 그늘진 곳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연속성 확보

※ 가로등(노폭 12m 이상 도로), 보안등(노폭 12m 미만 도로)을 적절히 설치하여 필요 조도 확보

설치사례



1

2

1, 2. 보행로의 조명 설치
3.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를 통한 보행로
조도 확보

1. 보행공간

★ (3) 범죄예방 시설 설치

여성 등 다양한 이용자가 사고위험 없이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야의 차단지역이나 외진 곳 등 관리가 필요한 장소에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여 범죄와 사고를 예방함

구분	기준 지표
권장	범죄우려지역,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야의 차단지역 및 외진 곳 등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 (4) 보행공간의 시야 확보

여성 등 다양한 이용자가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각적으로 차단되어 사고위험이 높은 공간의 조성을 지양하고 공공의 감시망이 작동하는 개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구분	기준 지표
권장	도로 시설물 및 수목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로 주변 시야의 사각지대 부분은 볼록거울 설치

설치사례



1 2



1, 2. 가로수의 가지치기, 낮은 관목 등을 통한 보행공간의 시야 확보

2. 버스승강장

2.1 버스승강장의 설치

2.2 버스승강장의 구조

2.3 안내시설

2.4 버스승강장의 안전성

2. 버스승강장

2.1 버스승강장의 설치

★ (1) 버스승강장의 위치

보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주변의 이동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어야 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걸어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
권장	이동하는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

(2) 버스승강장과 주변시설의 연계

버스승강장 주변으로 다양한 시설을 연계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과 주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구분	기준지표
권장	버스승강장과 연계하여 카페테리아, 자전거보관소, 편의점(24시간 운영), 공공에 개방된 화장실 등 배치

(3) 버스승강장의 접근

유아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 보행보조기, 휠체어 이용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보행에 제약받지 않고 버스승강장까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함

구분	기준 지표
필수	가로수, 가로등 등 주변 시설물로 인해 보행자가 버스승강장에 접근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설치

관련 법령 및 규정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여객시설 정류장

- 주변의 가로수나 시설물들로 인해 접근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며 특히 가로수 설치는 제외하거나 충분한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함

2. 버스승강장

2.2 버스승강장의 구조

★ (1) 버스승강장의 형태

비나 먼지, 더위나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 승차 시까지 대기할 수 있어야 함

구분	기준지표
권장	유개승강장으로 설치하고, 수직가림막 설치

관련 법령 및 규정

■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버스승차대 설치를 위한 최소 폭인 3.3m 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표지판만 설치
- 마산회원구, 합포구, 진해구 지역과 같이 보도의 폭이 좁은 지역은 승차대의 측면판이 없는 형태로 설치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대기시간의 불편함을 감소시켜줄 벤치 및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캐노피를 설치
- 버스 진입방향에는 측면광고면을 설치하지 않으며, 우천 시 등을 고려하여 지붕이 있는 형태를 갖추도록 함

(2) 버스승강장 내 의자 설치

다양한 높이의 의자를 설치하여, 아동은 낮은 높이의 의자에 앉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은 높은 의자에 걸터앉거나 기댈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음

구분	기준 지표
필수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의자 설치
권장	아동이나 고령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높이의 의자 설치

설치사례



1 2

1, 2. 두 가지 높이로 된 버스승강장 내 의자

2. 버스승강장

★ (3)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 공간 확보

수직가림막이 있는 경우, 유아차나 보행보조기, 휠체어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동 및 대기에 필요한 최소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휠체어나 유아차가 승강장 내로 진입 가능하도록 최소 1m 이상의 개구부 설치
권장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승강장의 경우 필수 기준을 만족하고, 버스승강장 내 유아차 및 휠체어 대기 공간 확보 (단, BRT 승강장 설치 시, 권장 기준을 필수로 적용함)

관련 법령 및 규정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여객시설 정류장

-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아무런 제약없이 기다릴 수 있도록 충분한 대기공간을 확보
- 무장애 정류소는 일반인 대기공간과 휠체어 대기 공간을 구분하며, 휠체어 승차장 위치를 표시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

- 일반인 대기공간과 휠체어 대기 공간을 구분하며, 휠체어 승차장 위치를 표시함
- 장애인 등을 위한 승차 대기공간의 주요 사용자는 휠체어 사용자 또는 유모차 등반자이므로 벤치를 설치하지 않으며 지체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위해 수평손잡이를 설치

설치사례



1
3

2

1. 휠체어와 유아차가 승강장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개구부
- 2, 3. 휠체어와 유아차가 대기할 수 있는 승강장 내 공간 확보

2. 버스승강장

(4) 버스승강장의 단차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이용자, 아동,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버스승강장 승하차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승강장의 단차 높이를 설정함

구분	기준지표
권장	교통약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저상버스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버스승강장의 단차 높이 조정 (단, BRT 승강장의 경우 권장 기준을 필수로 적용함)

관련 법령 및 규정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여객시설 정류장

- 경계 부분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를 기준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저상버스로 옮겨 탈 수 있는 높이로 하여야 하며, 높이 0.25m 이하로 설치

★ (5) 보행공간 확보

보행공간 내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행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보행공간 내 버스승강장 설치 시, 최소 1.5m 이상의 보도폭원을 확보
권장	보행공간 내 버스승강장 설치 시, 최소 2.0m 이상의 보도폭원을 확보

관련 법령 및 규정

■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보도 유효폭은 2m 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마산회원구, 합포구, 진해구 지역과 같이 보도의 폭이 좁은 원도심 지역은 보행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기준인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함

설치사례



1

2

1, 2. 버스승강장 후면의 보행공간 유효폭 확보

2. 버스승강장

2.3 안내시설

★ (1) 노선도

고령자 등도 노선도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되거나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노선도의 재질을 고려하고, 적절한 글씨크기로 표기하여야 함

구분	기준지표
권장	노선도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노선도의 재질, 글씨 크기 등 고려

★ (2) 안내기 및 안내표지판

정류소안내기(BIT), 안내표지판 등 안내시설은 승강장의 의자에 앉았을 때 버스의 진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야를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구분	기준 지표
권장	정류소안내기(BIT), 안내표지판은 버스의 진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야를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

관련 법령 및 규정

■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버스승차대 주변에서는 버스가 진입해 들어오는 방향인 좌측은 버스승차대로부터 5m 이상 이격 된 거리, 우측은 3m 이상 이격 된 장소에서부터 시설물 설치

설치사례



1

2

1, 2. 버스의 진입을 가리지 않는
안내시설의 설치

2. 버스승강장

2.4 버스승강장의 안전성

★ (1) 시야 개방성 확보

여성 등 다양한 이용자가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각적으로 차단되어 사고위험이 높은 공간의 조성을 지양하고 버스승강장과 주변이 개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함

구분	기준 지표
필수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여 버스승강장 시야 확보. 내·외부로의 시야 확보를 위해 투시성 있는 벽면재료 사용
권장	버스정보안내, 버스승강장 주변 식재나 수목 등으로 인한 시각차폐요소가 없도록 배치

※ 광고지의 경우 버스 진입방향으로는 설치하지 않아야 함. 버스 진입 방향 외 가림막의 경우는 광고판이 전면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및 규정

■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승차대 좌측 5m 이내 가로수 등 식재가 있을 경우 시야확보를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식재 제거 권장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

·버스 진입방향에는 측면광고면을 설치하지 않으며, 우천 시 등을 고려하여 지붕이 있는 형태를 갖추도록 함

설치사례



1

1.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여
시야의 개방성 확보

★ (2) 버스승강장의 안전시설 설치

여성 등 다양한 이용자가 버스를 이용해 야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과 주변에 적정한 조도를 확보하고,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함

구분	기준 지표
필수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야간 조도 확보
권장	버스승강장 자체 야간조명을 확보하고, CCTV 및 비상벨 설치

관련 법령 및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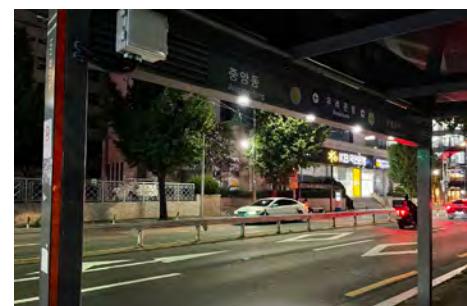
■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버스승차대 야간조명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우선으로 적용하여 사용자의 시각적·심리적 편안함과 버스관련 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중심으로 적용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

·야간 안전확보를 위해 적절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

설치사례



1 2

1, 2. 버스승강장에 조명 설치



III. 특화시설

1. 생활체육시설

- | | |
|-----------------|---------------|
| 1.1 주차장 | 1.6 화장실 |
| 1.2 복도 및 실별 출입문 | 1.7 탈의 및 샤워시설 |
| 1.3 계단 | 1.8 수영장 |
| 1.4 안내시설 | 1.9 아기휴게실 |
| 1.5 휴게공간 | |

1. 생활체육시설

1.1 주차장

(1) 배려주차장의 설치대수

배려주차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고령자 등 승하차 시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은 주차구역이 필요한 이용자들을 위해 넓이를 확장한 주차구획을 설치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생활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에는 배려주차장을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
권장	생활체육시설의 배려주차장을 전체 주차대수의 20 % 이상 설치

※ 전체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는 1대로 간주함

관련 법령 및 규정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원 산책로

-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다목적 화장실, 수유실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병기, 픽토그램, 인적 대응을 배려
- 영유아 동반자 등을 배려한 주차공간, 위생시설, 영유아 돌봄시설 등을 설치

설치사례



1

2

1. 배려주차장 설치(여성가족부, 2017: p.92)
2. 배려주차장 설치(시흥시, 2013: p.12)

III. 특화시설

(2) 배려주차장의 설치 위치

배려주차구역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주출입구에서 장애인주차구역 다음으로 인접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기준지표
권장	생활체육시설 출입구 가까운 곳에 배려주차장 설치

(3) 배려주차장의 주차구역 크기

뒷좌석 영유아 및 아동의 승하차를 위한 뒷문 개폐 공간, 유아차 이용에 요구되는 공간을 고려하여 일반주차구역보다 넓은 폭으로 설치하여야 함

구분	기준지표
권장	배려주차장은 확장형 이상으로 설치

1. 생활체육시설

(4) 주차장의 유도표시 및 안내표시

주차장 입구에서 배려주차장까지 안전하고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유도표시를 설치하여야 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주차장의 입구에 배려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
권장	필수 기준을 만족하고, 배려주차구획의 바닥안내표시 및 입식안내표시를 적절히 설치

1.2 복도 및 실별 출입문

(1) 복도의 바닥마감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坦하게 마감하고,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 사용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나. 바닥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坦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시설

(2) 복도 내 난간 설치

고령자, 장애인 등 보행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보행을 도울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함

구분	기준지표
권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확보와 건물 내부의 유도 안내를 위하여 복도 측면에 난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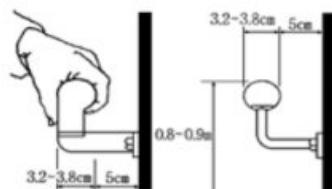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다. 손잡이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층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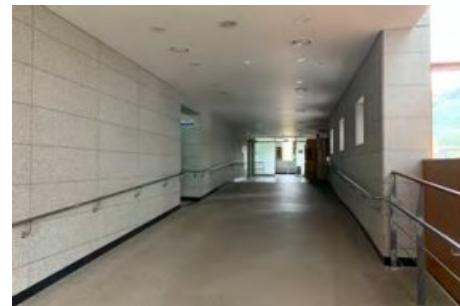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건축물, 이동공간

- 키가 작은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등이 사용하기 쉽도록 다른 높이의 2단 손잡이를 권장

III. 특화시설

설치사례



1

2

1, 2. 복도 측면에 난간 설치

1. 생활체육시설

(3) 실별 출입문 및 복도의 유리창 설치

내부 활동이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출입문과 복도에 유리창을 설치하여 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위급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함

구분	기준지표
권장	내부 활동이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출입문과 복도에 유리창 설치

설치사례



1

2

3

1, 2. 출입문에 유리창 설치
3. 실 복도에 유리창 설치

1.3 계단

(1) 계단의 유효폭

계단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용자들이 교행 시 불편함이 없도록 유효폭과 휴식참을 확보함

구분	기준 지표
필수	주 계단의 유효폭을 1.2m 이상, 계단참의 유효폭을 1.2m 이상 확보
권장	모든 계단의 유효폭을 1.2m 이상, 계단참의 유효폭을 1.2m 이상 확보

관련 법령 및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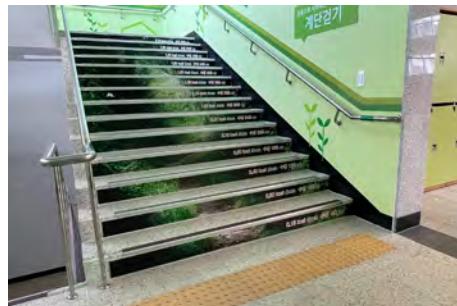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설치사례



1

2

1. 주 계단의 유효폭 1.2m으로 설치
2. 주 계단의 계단참 유효폭을 1.2m 이상 확보

1. 생활체육시설

(2) 계단의 재료

계단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용자들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바닥재질로 마감하여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주 계단의 디딤판 끝단을 미끄럽지 않도록 마감하고, 색상이나 재질로 끝단임을 표시
권장	모든 계단의 디딤판 끝단을 미끄럽지 않도록 마감하고, 색상이나 재질로 끝단임을 표시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마. 재질과 마감

-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坦하게 마감할 수 있다.
-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하거나 경질고무류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치사례



1 2

1. 디딤판의 끝단을 미끄럽지 않게 하고 다른 색상으로 표시한 계단
2.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럽지 않게 마감한 계단

(3) 계단의 난간

아동·동반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굽기의 손잡이를 연속적으로 설치

구분	기준 지표
필수	주 계단에 높이 0.8~0.9m, 굽기 3.2~3.8cm, 차갑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를 한 쪽 면에 연속적으로 설치
권장	필수 기준을 만족하고, 주 계단에 아동을 위한 하부손잡이를 높이 0.65m 내외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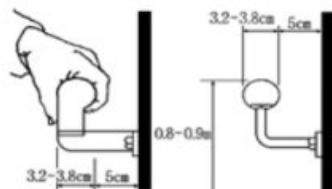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다. 손잡이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층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굽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건축물, 이동공간

· 계단의 양측에 2단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권장

1. 생활체육시설

1.4 안내시설

★ (1) 종합안내도

유아차 이용자 및 아동 동반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건축물 내부를 이용하기 전에 전체 건축물의 층별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전체 층별 안내 표지판은 주 출입구 근처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돌봄·편의시설 포함)
권장	필수 기준을 만족하고, 층별로 해당 층의 안내 표지판 설치(돌봄·편의시설 포함)

설치사례



1 2

- 가족샤워실, 가족화장실이 표시되고, 모든 층별 안내가 포함된 종합안내지도
- 가족샤워실과 가족탈의실이 표시된 안내지도

(2) 승강기 내 층별 안내판 설치

각 층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 내에 안내판을 설치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승강기 내에 각 층별 안내판 설치(돌봄·편의시설 포함)

(3) 안내 픽토그램 표시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도 화장실, 아기휴게실, 영유아 시설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픽토그램을 활용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화장실, 영유아 이용시설, 다목적화장실, 아기휴게실, 영유아 놀이시설은 해당 시설에 픽토그램 표시
권장	화장실, 영유아 이용시설, 다목적화장실, 아기휴게실, 영유아 놀이시설은 해당 시설과 층별 안내판에 픽토그램 표시(외국인 이용 많은 시설은 필수)

1. 생활체육시설

1.5 휴게공간

(1) 휴게공간 확보

체육시설은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무는 곳이므로, 이용자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구분	기준 지표
권장	이용자들을 고려한 휴게의자 등 휴게공간 확보

설치사례



1 2

3 1, 2. 휴게공간 조성
3. 생활체육시설 내 북카페 설치

1.6 화장실

(1)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

남녀 화장실의 출입구를 분리 배치하여 화장실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 안전 및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여야 함

구분	기준 지표
필수	남녀 화장실이 근접할 경우, 출입구 주변에 차단시설을 적절하게 설치
권장	남녀 화장실 출입문까지 완전 분리 설치

관련 법령 및 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설치사례



1

2

- 남녀 화장실의 출입구를 완전히 분리
- 출입구 사이가 막혀있어 시야가 섞이지 않고
동선이 구분된 남녀 화장실 출입구

1. 생활체육시설

★ (2) 남녀 화장실의 영유아 보조화장실 설치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및 영유아 보조의자를 남녀 화장실 모두에 설치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남녀 화장실 단위부스 내 영유아 보조의자 설치
권장	남녀 화장실 단위부스 내 영유아 보조의자, 어린이용 변기 설치

※ 다목적 화장실에 영유아 보조의자, 어린이용 변기 설치 시 대체 가능

※ 공간이 협소할 경우 성인용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 설치

관련 법령 및 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 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사례



1

1, 2, 3. 화장실 단위부스 내 영유아보조의자 설치

1. 생활체육시설

★ (3) 남녀 화장실의 영유아 및 어린이 시설 설치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기저귀교환대, 어린이용 세면대를 남녀 화장실 모두에 설치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 설치
권장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 다목적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시 대체 가능

관련 법령 및 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사례



1



2

1, 2.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 설치

(4) 다목적 화장실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별도의 화장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장애인화장실 내에 영유아 시설을 설치하여 다목적 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음. 이 때 장애인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우선적으로 충족하여야 함

구분	기준 지표
필수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변기, 기저귀교환대, 영유아 보조의자, 비상벨이나 비상전화 등을 갖춘 다목적 화장실을 남녀 각1개소 이상 설치함
권장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변기, 기저귀교환대, 영유아 보조의자, 어린이용 세면대, 비상벨이나 비상전화 등을 갖춘 다목적 화장실을 남녀 각1개소 이상 설치함

※ 다목적 화장실은 장애인화장실의 기능을 겸하므로, 다목적 화장실의 출입문은 생활체육시설 장애인화장실의 출입문 유효폭의 기준을 적용하여 1.2m 이상으로 함

관련 법령 및 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3) 기타 설비

(나) (가)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화장실 (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 출입구(문) 중 경기용 훨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실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다목적 화장실, 수유실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병기, 픽토그램, 인적 대응을 배려
- 영유아 동반자 등을 배려한 주차공간, 위생시설, 영유아 돌봄시설 등을 설치

1. 생활체육시설

★ (5) 화장실 안내 표시

화장실 입구, 단위부스 문 외부에 안내 표시를 설치하여 화장실의 편의시설 관련 정보를 제공함

구분	기준 지표
필수	단위부스 문 외부에 변기 종류 및 사용 여부 확인 장치, 영유아 및 어린이 시설 안내 표시 설치
권장	필수 기준을 만족하고, 화장실 외부에 장애인 화장실, 영유아 및 어린이 시설이나 다목적 화장실 안내 표시 설치

관련 법령 및 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 대변기

(4) 기타 설비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다목적 화장실, 수유실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병기, 픽토그램, 인적 대응을 배려

설치사례



1

1. 남녀화장실 외부에 영유아 보호의자 설치 안내 표시

1.7 탈의 및 샤워시설

(1) 남녀 출입구 분리

탈의 및 샤워시설의 남녀 출입구를 분리 배치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여야 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탈의 및 샤워시설의 남녀 출입구를 인접하지 않도록 분리 설치

설치사례



1 2

1, 2. 남녀 탈의실의 출입구를 인접하지 않은 위치에
분리하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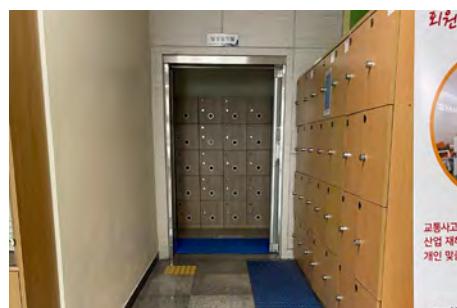
1. 생활체육시설

(2) 탈의실 구조

가림막, 가림벽 등 시선을 차단하는 공간배치를 통해 탈의 시 심리적 안정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입구에서 탈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설치사례



1

2

3

1, 2, 3. 탈의실 내부가 바로 들여다보이지 않는 구조로 된 출입구

(3) 파우더 공간 설치

탈의실 이용후 외관을 정비하고 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탈의실과 구분된 별도의 파우더 공간을 마련하고 거울, 선반 등 설치

구분	기준지표
권장	탈의공간과 구분된 파우더 공간을 남녀 모두 설치

※ 거울은 탈의하는 모습이 비치지 않는 위치와 각도로 설치

설치사례



1

2

1. 파우더 공간의 설치
2. 탈의공간과 완전히 구분된 파우더 공간의 설치

1. 생활체육시설

(4) 샤워실 출입구

물을 사용하는 곳이므로 바닥에 물이 고여 미끄러지거나 문틀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계획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탈의실과 샤워실 사이의 출입구는 물이 고이지 않고 단차가 없도록 계획

설치사례



1 2



1, 2. 단차가 없고 미끄럼지 않은
탈의실과 샤워실 사이 출입구

(5) 탈의실 및 샤워실 바닥재

탈의실과 샤워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평탄하고 미끄럼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탈의실 및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미끄럼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다. 바닥

-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설치사례



1 2

1, 2. 미끄럼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된 바닥

1. 생활체육시설

★ (6) 샤워기 칸막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확보 및 물 튀김 방지를 위해 샤워기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함

구분	기준지표
권장	입식샤워기 사이에 칸막이 설치

설치사례



1

1. 입식 샤워기 사이 칸막이 설치
(고창군, 2020:p.142)

★ (7) 장애인 샤워실

신체가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샤워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공간 및 별도의 샤워실을 마련함

구분	기준지표
권장	장애인의 보조자 동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내 장애인 전용 자리나, 별도의 장애인샤워실을 설치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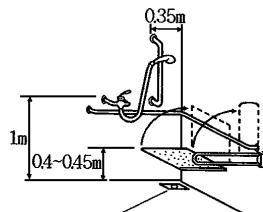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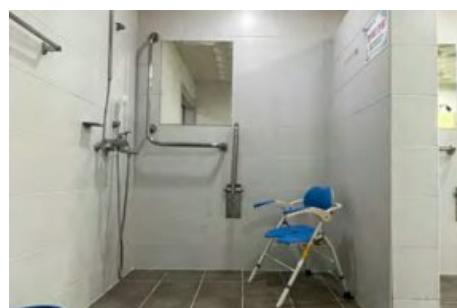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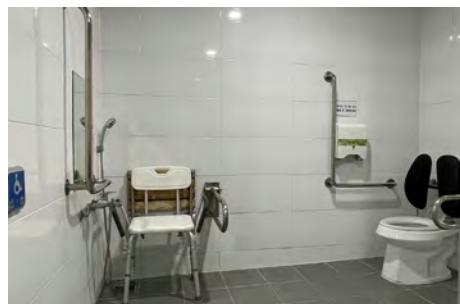
(2) 샤워기는 얹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시설

설치사례



1

2

3

1, 2. 별도의 장애인샤워실 설치
3. 샤워실 내 장애인 전용 자리 설치

★ (8) 가족샤워실

만5세 이상의 성별이 다른 유아 동반시 샤워실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남녀 탈의 및 샤워시설과 별도로 가족 샤워실 설치

구분	기준지표
권장	성별이 다른 만5세 이상의 유아 및 어린이 동반이 가능한 가족샤워실 설치

설치사례



1

2

3

- 1, 2. 장애인·가족샤워실 설치
3. 샤워실 내 별도의 가족샤워실 설치

1. 생활체육시설

1.8 수영장

(1) 이용자의 다양성 고려

다양한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수심에 따라 풀을 구분하여 조성하거나, 바닥의 높이 차이를 활용하는 등 수심을 다양하게 계획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수영장 수심을 다양화함

설치사례



1

2

1. 유아풀 설치
2. 바닥 높이를 다르게 하여 수영장 수심을 다양화함

★ (2) 고령자, 장애인 이용 고려

신체가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이 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풀에 진입하는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하고, 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비치하여 휠체어 이용자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구분	기준 지표
필수	고령자, 장애인 이용을 고려하여 수영장 풀 내 경사로 설치
권장	수영장 내 입수용 휠체어 비치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설치사례



1 2

1. 풀 내 경사로 설치
2. 입수용 휠체어 비치

1. 생활체육시설

1.9 아기휴게실

(1) 아기휴게실 설치

영유아 수영 등 영유아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아기휴게실을 설치하여 영유아 동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함

구분	기준지표
권장	영유아 동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경우 아기휴게실 설치

※ 아기휴게실 설치 시 상세한 기준은 1년차 가이드라인 참조

관련 법령 및 규정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다목적 화장실, 수유실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병기, 픽토그램, 인적 대응을 배려
- 영유아 동반자 등을 배려한 주차공간, 위생시설, 영유아 돌봄시설 등을 설치

2. 종합운동장

2.1 주차장

2.2 안내시설

2.3 관람석

2.4 편의시설

2.5 휴게공간

2. 종합운동장

2.1 주차장

★ (1) 배려주차장의 설치대수

배려주차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고령자 등 승하차 시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은 주차구역이 필요한 이용자들을 위해 넓이를 확장한 주차구획을 설치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종합운동장의 부설주차장에는 배려주차장을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
권장	종합운동장의 부설주차장에는 배려주차장을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

(2) 배려주차장의 설치 위치

배려주차구역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주출입구에서 장애인주차구역 다음으로 인접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종합운동장 출입구 가까운 곳에 배려주차장 설치

(3) 배려주차장의 주차구역 크기

뒷좌석 및 아동의 승하차를 위한 뒷문 개폐 공간, 유아차 이용에 요구되는 공간을 고려하여 일반주차구역보다 넓은 폭으로 설치하여야 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배려주차장은 확장형 이상으로 설치

관련 법령 및 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4) 주차장의 유도표시 및 안내표시

주차장 입구에서 배려주차장까지 안전하고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유도표시를 설치하여야 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주차장의 입구에 배려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권장	필수 기준을 만족하고, 배려주차구획의 바닥안내표시 및 입식안내표시를 적절히 설치

2. 종합운동장

(5) 보행안전통로 확보

차량 통행으로부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통로를 연속하여 설치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장애인주차장, 배려주차장에서 출입문까지 연속적으로 설치. 단차가 있을 경우 1/12 이상의 경사로 설치
권장	필수기준을 만족하고,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곳곳에 설치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설치사례



1

1. 주차장 내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 설치

(6) 주차장 내 적정조도

여성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절한 조도를 확보함

구분	기준 지표
필수	주차장로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평균조도값은 40lux 이상 확보
권장	주차장로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평균조도값은 60lux 이상 확보

관련 법령 및 규정

■ KSA 3011 조도기준 [표5 교통]

- 유료 주차장(공간의 전반 조명)

분류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소규모	15	20	30
대규모	30	40	60

2. 종합운동장

★ (7) 주차장 내 응급상황 대처 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범죄, 위급상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대처시설을 설치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주차장에 CCTV 설치
권장	필수 기준을 만족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비상벨이나 비상전화 설치

관련 법령 및 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항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2 안내시설

★ (1) 종합안내도 설치

종합운동장의 어느 위치에서나 쉽게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출입구와 주요 장소에 종합안내도 설치

구분	기준지표
필수	종합안내도는 주요 출입구에 설치
권장	종합안내도는 주요 출입구와 층별 주요 장소에 설치

※ 종합운동장 인근 버스승강장에 종합운동장 방향 안내 표시 설치(바닥 및 입식) 고려

설치사례



1

1. 종합안내도 설치

2. 종합운동장

(2) 종합안내도 표시

종합안내도에는 주요시설의 명칭과 위치 뿐 아니라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자들의 이용 시설인 휠체어석, 장애인 화장실, 다목적화장실, 아기휴게실, 유아차 보관소, 유아놀이방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표시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종합안내도에는 현 위치 표시, 휠체어석 이동 동선, 돌봄·편의시설의 위치 표시를 포함

※ 시민 이용이 많은 행사 등이 있을 경우 종합안내도의 음성 안내 시설의 전원 등 작동 여부 관리

설치사례



(출처: MAZDA Zoom-Zoom 스타디움 히로시마 홈페이지 <http://www.mazdastadium.jp/>)



1. 종합안내도에 다양한 정보 표시
2. 종합안내도에 포함된 돌봄·편의시설 사례

(3) 피난안내도

피난안내도는 위급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동선 상에 인지하기 쉽도록 설치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피난안내도는 주요 동선 상에 잘 보이도록 설치

설치사례



1 2

1. 피난안내도 설치
2. 주요 동선상에 피난안내도 설치

2. 종합운동장

2.3 관람석

(1) 휠체어 좌석 설치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좌석을 설치함. 휠체어 이용자와 동반한 사람들이 함께 경기 및 행사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휠체어 좌석 설치
권장	휠체어 좌석은 휠체어이용자와 동반자가 함께 관람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체육시설은 휠체어 이용자 등도 함께 이용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며, 관람석 등은 휠체어 이용자 및 동반자가 함께 관람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

■ 창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제4조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설치사례



1

2

3

1, 2, 3. 휠체어 좌석 설치

2. 종합운동장

(2) 휠체어 좌석의 접근성 확보

휠체어 좌석에서 출입구, 장애인화장실 및 다목적화장실 등의 이용이 편리하여야 함. 동선은 경사로와 승강기 등을 통해 연속적으로 계획하여 이동이 수월하도록 하고, 단차나 보행장애물 등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휠체어 좌석에서 출입구, 장애인화장실 및 다목적화장실 등의 이동 동선은 단차 및 보행장애물 없이 승강기, 완만한 경사로 등으로 바로 이동 가능하도록 계획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영유아 동반자, 노인, 장애인 등이 주출입구에서 관람석 등 목적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이동 동선으로 계획하며, 최대한 알기 쉽고 최단의 거리로 계획
- 주출입구에서 매표소, 개찰구 등을 거쳐 장애인용 관람석까지 연결되는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며, 수직이동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적합한 경사로나 승강기를 설치
-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경기장이 잘 보이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며, 출입구에서 단차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함

■ 창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제5조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4 편의시설

★ (1) 영유아 동반 이용시설 설치

영유아 동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아기휴게실과 유아차 보관소, 유아놀이방 등을 설치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아기휴게실, 유아차 보관소 설치
권장	필수기준을 만족하고, 유아놀이방 설치

관련 법령 및 규정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다목적 화장실, 수유실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병기, 픽토그램, 인적 대응을 배려
- 영유아 동반자 등을 배려한 주차공간, 위생시설, 영유아 돌봄시설 등을 설치

설치사례



1

2. 아기휴게실(수유실) 설치

3. 유아차보관소 설치

(출처: MAZDA Zoom-Zoom
스타디움 히로시마 홈페이지
<http://www.mazdastadium.jp/>)

2. 종합운동장

(2) 유아차 보관소의 접근성 확보

유아차 보관소는 출입구와 영유아동반자가 이용하여야 하는 시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유아차 보관소는 단차 및 보행장애물 없이 승강기, 완만한 경사로 등으로 출입구, 다목적화장실에 쉽게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

★ (3) 다목적 화장실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별도의 화장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장애인화장실 내에 영유아 시설을 설치하여 다목적 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음. 이 때 장애인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우선적으로 충족하여야 함

구분	기준 지표
필수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변기, 기저귀교환대, 영유아 보조의자, 비상벨이나 비상전화 등을 갖춘 남녀 다목적 화장실을 전체 화장실 개소수의 50% 이상 설치
권장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변기, 기저귀교환대, 영유아 보조의자, 어린이용 세면대, 비상벨이나 비상전화 등을 갖춘 남녀 다목적 화장실을 모든 화장실에 설치

관련 법령 및 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다목적 화장실, 수유실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병기, 픽토그램, 인적 대응을 배려
- 영유아 동반자 등을 배려한 주차공간, 위생시설, 영유아 돌봄시설 등을 설치

2. 종합운동장

(4) 화장실 안내 표시

화장실 입구, 단위부스 문 외부에 안내 표시를 설치하여 화장실의 편의시설 관련 정보를 제공함

구분	기준 지표
필수	단위부스 문 외부에 변기 종류 및 사용 여부 확인 장치, 영유아 및 어린이 시설 설치 안내 표시 설치
권장	필수 기준을 만족하고, 화장실 외부에 장애인 화장실, 영유아 및 어린이 시설이나 다목적 화장실 안내 표시 설치

관련 법령 및 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 대변기

(4) 기타 설비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다목적 화장실, 수유실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병기, 픽토그램, 인적 대응을 배려

설치사례



1. 화장실 외부 이용자안내 픽토그램 표시

2.5 휴게공간

(1) 휴게공간 확보

종합운동장은 다양한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무는 곳이며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운동장 내·외부 곳곳에 이용자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구분	기준지표
필수	이용자들을 고려한 휴게의자 등 내·외부 휴게공간 확보

설치사례



1

2

1, 2. 외부 휴게공간 설치

참고자료 및 관련 법령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2018),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 남수현·강미현·조연숙·최정선·남희경(201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2019),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 서영주·이재림·이순희·이주나·안재희·장명선·문은영·황치석·김은미(2009),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시흥시(2013),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 시흥시
- 여성가족부(2011), 여성친화도시 시설조성 가이드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성별영향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 유희정·김양희·이미원·최진·문희영(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 여성가족부
- 이명주·이승훈·최선민(2011),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명선·박선영·장미현·조연숙·최정선·유한결(2016), 『출산 양육지원 법령 및 돌봄시설 특정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부
- 장미현·남희경·이현주·한승연(2019),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음성군
- 장미현·심준영·조수현(2020),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농어촌형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고창군
- 장미현·최정선·박민아·전지아(201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 세종특별자치시
- 장미현·최정선·유희재(2016),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아산시
- 최유진·문희영·장미현(2013),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관련 법령 및 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성별영향평가법

양성평등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7호)

KSA 3011 조도 기준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MAZDA Zoom-Zoom 스타디움 히로시마 홈페이지, <http://www.mazdastadium.jp/>

연구수행기관 : (주)젠티공간연구소

연구자

- 연구책임자 : 장미현 ((주)젠티공간연구소 소장)
- 공동연구원 : 심준영 (전북대학교 강사)
- 연구보조원 : 조정은 (즐거운건축사사무소 소장)

발행일 :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 창원시 여성가족과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우)51435

대표전화 : 1899-1111

www.changwon.go.kr

이 책의 저작권은 창원시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본 보고서는 (주)젠티공간연구소가 창원시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